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6
----------	-----

발의연월일 : 2016. 7. 11.

발의자 : 이종배 · 김종태 · 주호영

배덕광 · 경대수 · 이학재

송희경 · 추경호 · 정유섭

김석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p> <p>① (생 략)</p> <p>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그----- -----.</p>